

#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서윤기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1643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년 7월 13일

발 의 자 : 서윤기, 김동식, 박기재, 정진철,  
김기대, 김제리, 봉양순, 임만균,  
정재용, 임종국, 양민규, 이정인,  
유정희, 박기열, 오현정, 전병주,  
이상훈, 김화숙, 황인구, 장상기,  
오중석, 최 선, 채인묵, 장인홍,  
이태성, 추승우, 이동현, 전석기,  
노식래, 노승재, 김경영, 김희걸,  
권순선, 문병훈, 김수규, 김광수,  
유 용, 송도호, 최영주, 문장길,  
최정순, 홍성룡, 김경우 의원(43명)

## 1. 제안이유

- 「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」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‘소외계층’을 ‘취약계층’으로 함(안 제4조, 제8조 및 제18조).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 없음.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.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첨부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제6호 중 “소외계층”을 “취약계층”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제4호 중 “소외계층”을 “취약계층”으로 한다.

제18조제7호 중 “소외계층”을 “취약계층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시장은 법 제9조의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한다. 이 경우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6. <u>소외계층</u>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</p> <p>7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4조(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<u>취약계층</u> ----- --</p> <p>7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8조(서울특별시 평생교육협의회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평생교육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<u>소외계층</u>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</p> <p>5.·6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8조(서울특별시 평생교육협의회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취약계층</u> ----- --</p> <p>5.·6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제18조(사업) 진흥원은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~ 6. (생략)

7.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참여 지원

8. ~ 13. (생략)

제18조(사업) -----

-----

-----.

1. ~ 6. (현행과 같음)

7. 취약계층-----

-----

8. ~ 13. (현행과 같음)